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태호 · 안철수 · 강명구
박충권 · 우재준 · 박정하
엄태영 · 윤영석 · 김성원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법률 제 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을 “직접”으로, “경우”를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